

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9월 15일.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10월 15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경식)

가. 제안이유

-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는 내국인과 외국인·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명예군민증 수여결정(안제2조) :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
- 명예군민증의 취소(안제4조) :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가 가능

- 다. 권리의무 부담(제5조) :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·의무 부담을 허가
- 라. 실비보상(안제6조) : 각종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■ 먼저 조례안의 주요 입안취지 보면

- 군정과 지역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·외국인에게 「평창군명예군민증서」를 수여하고, 증서를 받은 자가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(“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”) 및 제14조(“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”)의 권리·의무부담을 허가함으로서 「군민」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여 군정발전에 예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선정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음.

■ 종합 검토결과

- 군정수행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앞으로 평창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상자를 평창군민으로 선정함으로서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순시책이 아닌 활발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 :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. 끝 .